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3098
----------	------

제출연월일 : 2022년 1월 21일
제 출 자 : 서울특별시교육감

1. 제안이유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회계에서 교육환경개선 사업비를 직접 집행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4조(기금의 용도), 제5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등의 일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금의 용도 조항 개정(안 제4조)

-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 회계로 전출하여’ 조문 삭제하고 기금회계에서 직접 집행
- 기금의 용도 각 호 삭제

나. 기금의 관리 및 운용 조항 개정(안 제5조제2항제2호 개정 및 제3호 신설)

- 교육지원청, 교육시설관리본부에서 기금 집행 및 지출이 가능하도록 분임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 지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 별첨 7

-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별첨 2)

다. 협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1
- 입법예고(2021. 12. 2. ~ 12. 22.) : 입법예고 결과 요약서(별첨 3)
- 규제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통보서(별첨 4)
- 성별영향분석평가 : 성별영향평가서 제출 제외 통보 확인서(별첨 5)
- 학생인권영향평가 : 학생인권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별첨 6)
- 관계법규 : 별첨 7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기금의 조성) ②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30조제3항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여야 할 일정금액은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 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교육감이 결정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법 제31조에 따른 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1. 삭제
2. 삭제
3. 삭제

제5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분임기금운용관: 기금 운용 담당 과장(단장), 교육지원청은 행정지원국장, 교육시설관리분부는 총무부장
3. 기금출납원: 기금 담당 사무관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첨 1】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3조(기금의 조성) ① (생략)</p> <p>② 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여야 할 일정금액은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교육감이 결정한다.</p> <p>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여 법 제31조에 따른 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 학교 교육환경 개선비로 교부된 재원으로 당해 연도 교육시설 사업비를 충당할 수 없는 경우 2. 대규모 재난·재해 대응 및 예방 등을 위하여 교육환경 개선 	<p>제3조(기금의 조성) ① (현행과 같음)</p> <p>②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제3항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여야 할 일정금액은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교육감이 결정한다.</p> <p>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법 제31조에 따른 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삭제 2. 삭제 3. 삭제

현행	개정안
<p><u>사업이 필요한 경우</u></p> <p><u>3. 장기간이 소요되는 시설투자로서 여러 회계연도에 걸쳐 투자가 필요한 경우</u></p> <p>제5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생략)</p> <p>② 교육감은 기금운용계획의 집행과 기금의 지출을 위해 다음 각 호의 기금관리 공무원을 둔다.</p> <p>1. (생략)</p> <p>2. <u>기금출납원: 시설기획담당 사무관</u></p> <p><신설></p> <p>③·④ (생략)</p>	<p>제5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p> <p>1. (현행과 같음)</p> <p>2. <u>분임기금운용관: 기금 운용 담당 과장(단장), 교육지원청은 행정지원국장, 교육시설관리본부는 총무부장</u></p> <p>3. <u>기금출납원: 기금 담당 사무관</u></p> <p>③·④ (현행과 같음)</p>

【별첨 2】

[별지 제1호 서식]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해당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교육청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을 적립할 수 있는 경우는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근거 ① 「지방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교육비특별회계 출연금, ②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③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기부금, ④ 기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⑤ 그 밖에 시·도 조례로 정하는 수익금을 재원으로 하며,
- 여유 재원을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거쳐 교육감이 결정한 금액으로 적립하는 것으로 기금 적립을 위해 별도 재원 마련을 전제로 하지 않음

4. 작성자

-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시설안전과 행정6급 송하중 (02-3999-648)

【별첨 3】

< 별지 제5호 서식 >

입법예고 결과 요약서(예시)(제14조 관련)		
의견제출자	제 출 의 견	조 치 내 용
	해 당 없 음	

【별첨 4】

[별지 제3호서식]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제9조제2항 관련)

자 치 법 규 명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 가 담 당	감사관	교 육 행 정 6 급	기철민
입안주무부서	교육시설안전과	통 보 (조 치) 일	2021.12.6.
관련조문	검토결과		조치사항
안 제4조 안 제5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 조례는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함)」 제30조에 따라 우리 교육청의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것임 - 법 제30조에 따르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교육비특별회계의 출연금 일정 금액을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도록 되어 있을 뿐 그 밖에 재원으로 조성된 기금을 세출예산에 계상하도록 정하고 있지 않음 - 이에 따라, 그간 조례 제4조 각 호에 따라 기금 사용 시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여 사용하도록 한 사항을 삭제하여, 앞으로는 교육비특별회계에 전출하지 않고 법 제31조에 해당하는 사업을 위해 기금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업의 효과성과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동 조례안은 상위 법령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기금의 관리와 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기금이 적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한 사항으로 부패유발요인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동 조례 개정 시 제3조 및 제4조의 ‘법’이 상위 법령인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보다 명확히 표현될 수 있도록 제1조에 약칭을 삽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p>* 제1조(목적)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p>		“원안 동의”

【별첨 5】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21A서울교육033			
정책명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소관부서	기관명	서울특별시교육청		
	부서명	교육시설안전과		
	담당자명	이 원 경	전화번호	02-399-9648
평가서 제출날짜	2021년 12월 22일			
종합 검토 의견 (평가책임관)	<input checked="" type="checkbox"/> 개선사항 없음 <input type="checkbox"/> 자체개선안 동의 <input type="checkbox"/> 개선의견			
	<p>「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반영, 성별 균형 참여 등 개선할 사항이 없음</p> <p>○검토의견 반영계획서 : 해당 없음</p>			
<p>「성별영향평가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2021년 12월 3일</p> <p style="text-align: center;">성별영향평가책임관</p> <p>교육시설안전과장 귀하</p>				

과제 정보

[과제 열기]

과제명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법령)
기관	서울특별시교육청
평가년도	2021
과제생성일	2021/11/30
업무담당	이원경 (교육시설안전과) [기안내역]
기관담당	김소영 (민주시민생활교육과) [기안내역]
접수일	2021/12/02
관리번호	2021A서울교육032
컨설팅요청내역	없음
제외대상여부	예
자체개선사례	해당없음
상태	체 크 리 스톱 [완료(제외) - 2021/12/02]
	성별영향평가서 [-]
	성별영향평가서제출요청 [-]
	전 문 가 의 견 [-]
	검토의견통보서 [-]
	완료(제외)통보 [완료(제외) - 2021/12/03]
	반영계획서 [-]

【별첨 6】

**자치법규 · 단위사업
학생인권영향평가 검토의견서**

자치법규 (단위사업)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담당부서	교육시설안전과	담당자	직급	행정6급	성명	이원경
평가담당	학생인권위원회 기획홍보소위원회	고태훈, 박민재, 권정우, 김희진, 노희창, 송지은, 정진권				
해당조항	검토의견					검토결과
-	- 본 개정안에 관하여 학생인권 영향평가 결과 권고 의견이 없음.					원안동의 (권고의견 없음)

【별첨 7】

관계법규

■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약칭: 교육시설법)

[시행 2020. 12. 4] [법률 제16678호, 2019. 12. 3, 제정]

제30조(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의 설치 등) ① 교육감은 관할 교육시설의 환경개선을 위하여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교육비특별회계의 출연금
2.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3.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기부금
4. 기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5. 그 밖에 시·도 조례로 정하는 수입금

③ 교육감은 제2항제1호의 출연금으로 일정 금액을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④ 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31조(기금의 사용)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한다.

1. 교육시설의 안전점검, 유지보수 및 확충 사업
2. 제1호 외의 사업으로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3. 제1호에 따른 사업으로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의 방식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
4.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학생을 위한 교육시설을 개축하는 사업
5. 기금의 조성·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의 지출
6. 그 밖에 교육시설의 안전점검과 유지보수를 위하여 조례로 정한 사업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 2022. 1. 13.] [법률 제17893호, 2021. 1. 12., 타법개정]

- 제6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기금은 세계현금(歲計現金)의 수입·지출·보관의 절차,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처분의 예 또는 채권 관리의 예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 또는 위탁받은 사무를 담당하는 자의 책임에 관하여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 ③ ~ ⑥ 생략